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2가합140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중

피고1. D

2.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유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나기주

변론 종결2024. 9. 25.

판결 선고2024. 11.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피고 D는 2022. 4. 11.까지, 피고 E은 2022. 4. 12.까지 각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서산시 G 외 3필지 지상에 H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 8. 27.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1,0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이행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이행서'라 한다).

지급이행서

A. 시공사 C

B. 시행사 F(D, E)

상기 당사자는 서산시 G에 있는 H건물 시행, 시공 관련 첨부된 I에 제출할 청구서 채권 외 추가 미정산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공사대금미지급금	1,050,000,000	부가세 별도
----------	---------------	--------

1. A, B는 당사자 간 채권금액을 금 1,050,000,000원으로 한다.

2. B는 다음과 같이 채무변제를 이행한다.

- 서산시 G에 있는 H건물 B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통해 해당물건의 대출 상환금을 제외한 차액으로 A의 채무를 각 호실별 매각 후 잔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제한다.

- 분양 또는 매각 시기는 건물 활성화 시점(공실입점)으로 정하고, B는 진행사항을 A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분양 또는 매각이 1년 이상 지연될시 H건물 B 소유 부동산을 변제금만큼 소유권이전 한다. 단, 이전대상 호실은 갑, 을1) 협의 하에 분양가의 80%의 기준으로 정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피고 D: 자백간주(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피고 E은 지급이행서(갑 제1호증) 중 위 피고 명의 부분이 J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필적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문서 중 피고 E 명의 부분은 피고 E의 위임을 받은 J가 위임 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E이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이행서에 따른 약정금 1,0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채권은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해당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이 사건 지급이행서 작성일인 2018. 8. 27.이므로,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주장의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3.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청구의 표시 위 2. 가.항과 같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기간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등 참조). 또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6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이행서에 의하면, 원고 주장 약정금채권은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할 것이고,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된다.

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원고 주장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지급이행서의 작성일인 2018. 8. 27.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행서에 따른 이행기는 작성일로부터 1년 후인 2019. 8. 27. 또는 각 호실별 매각 후 잔금일(이 사건 부동산 L호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이 공매된 때인 2021. 11. 1.)부터 7일이 지난 날이라고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지급이행서에 따른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이 사건 지급이행서 작성일이 아니라 당사자가 이행기로 정한 2019. 8. 27.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 내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약정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E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지급이행서 제2항에서는 피고들이 채무변제를 이행하는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즉, 피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각 호실별 매각 후 잔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되, 분양 또는 매각이 1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이 사건 채권액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이전 대상 호실은 당사자간 협의 하에 정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또는 매각이 1년 이상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지급이행서상 약정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 E은 당사자의 의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이 사건 부동산 자체만을 정산 대상으로 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급이행서 작성일로부터 언제든지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피고의 주장과 이 사건 지급이행서의 문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이행서 제2항에서 분양 또는 매각이 1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약정금 1,050,000,000원의 이행기가 도래하되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행서의 약정금채권의 이행기는 2018. 8. 27.로부터 1년 후인 2019. 8. 27. 도래하였다.

(3) 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인 2019. 8. 28.부터 피고 D는 2022. 4. 11.2) 까지, 피고 E은 2022. 4. 12.3) 까지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석

판사강성대

판사김영미

- 1) A, B의 오기로 보인다.
- 2)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D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날.
- 3)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E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날.